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공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오니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체결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산학, 산연 양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

- *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 협약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2. 주요내용

- (계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서 유형을 선택
 - * 상호준거로서 권장하며 사적자치의 우선원칙에 따라 강제적 구속력은 없음
- (수익배분) 공동소유 유형의 경우 수익배분을 의무화하고, 기업 단독소유 유형의 경우 수익보상을 실시하도록 명문화
- (지급시기 일부유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및 보상, 비용부담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지재권 출원 및 유지비용 등 일부 지급시기 유예 가능

3. (FAQ)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각 조항별 상세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취지, 활용 등에 대한 총 36개의 자주 묻는 질문 (FAQ)도 함께 수록

※ 시행시기 : '13. 1. 1일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2012. 12.

관계부처 합동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목 차

I . 가이드라인 개요	1
1.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2
II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6
1. 협약 절차	8
2. 계약서 유형 선정 방향	9
3. 계약서 선택 영향요인 및 유형선택 모델	10
4. 단계적 의사결정에 의한 계약서 유형선택	12
III . 산학연 협력연구 유형별 권고 계약서 (양식) ...	15
IV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해설서	74
V . 가이드라인 관련 FAQ	103

I.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

- 국가 R&D와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의 준거를 마련하여 기업은 시장기회를 넓히고 학연은 연구역량을 높여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R&D의 양적·질적 도약 뒷받침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산학연 집단간 이해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互惠的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재산 창출기반 조성
- 기업, 대학, 연구소가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협약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마련을 통해 협약시 불필요한 시간·비용 절감과 갈등 해소

□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R&D) 성과의 질적·양적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함
- 상호준거로서의 실효성과 사적자치의 유연성이 조화된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 대기업·중소기업, 선도대학(연구소)·군소대학(연구소) 등 개별 협력주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형별 협약 선택 가능성 확보
-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합리적 수익 배분을 통해 산학연 협력 주체들의 상호 이익 균형

□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산학, 산연 양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를 대상 적용 범위로 함
 -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의 경우 준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학연 협약시 상호 객관적 준거로 활용

□ 가이드라인 수립 근거 법령(지식재산기본법)

- 기본이념으로 지식재산 창출자의 창의적, 안정적 활동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설정(제2조 기본이념)
-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함(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조항>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과학기술기본법 주요 관련 조항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제품(시작품) 및 연구 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연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Ⅱ.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 고려 사항〉

-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자세 견지
 - 기업은 學研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 學研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상호간에 이익이 됨을 공감

-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을 위한 산학연 상호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은 법, 제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함
 - 따라서, 단기에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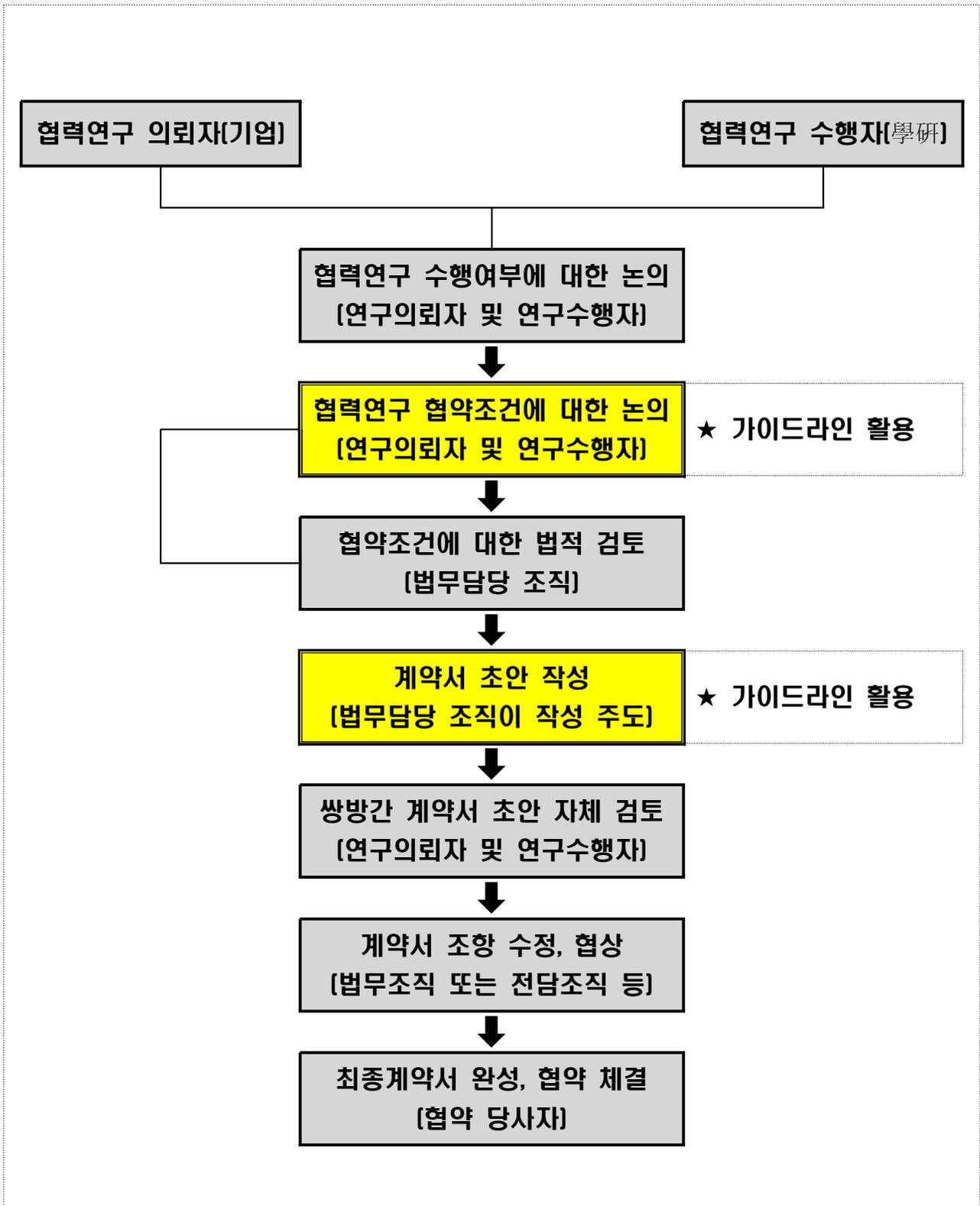
- 상식적, 보편적 원칙을 무시한 일방의 주장 자제
 - 협상의 기본원칙은 “상호주의(Give-and-Take)”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굳이 자신에게 불필요한 조건은 고집하지 않는 등 상호간의 배려 입장을 견지

- 협상 상대방의 위치·지위를 이용한 임의적·자의적 협약 자제
 - 산학연 각 주체의 입장에서는 협력연구 협약의 일관된 원칙과 룰(rule)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 협상을 넘어서 상대방의 위치나 지위를 이용한 임의적, 자의적 권한 행사는 지양

1

협약 절차

□ 산학연 협력연구의 일반적 협약 절차



2

계약서 유형 선정 방향

□ 계약서 유형화 방향

- 연구결과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익 배분과 전유성(專有性)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핵심 쟁점
 - 기업은 적정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수익 배분을, 學研은 수익에 따른 분배 관점의 수익 공유를 요구
 - 기업은 해당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위한 소유 및 실시를, 學研은 후속 연구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한 소유 및 실시를 요구

◆ 따라서, 수익 배분 및 전유성(專有性)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 귀속 형태와 실시권·수익 배분 형태를 이용하여 조합 가능한 9가지 유형을 마련 후,
 → - 産/學研이 각각 수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6가지 유형을 가이드라인 권고 유형으로 선정

□ 계약서 유형 선정 결과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선호도
學研 단독 소유	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허여	(제외) 기업 수용 곤란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1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유형 2	
	기업에 무상 전용 실시권 허여	(제외) 學研 수용 곤란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보상(인센티브)	유형 5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보상(인센티브)	유형 6	
	수익 배분, 보상 없음	(제외) 學研 수용 곤란	

*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3

계약서 선택 영향요인 및 유형선택 모델

□ 계약서 유형 선택 영향요인 및 방향성

1단계 의사결정 기준

① 프로젝트 수행 주체

- 프로젝트 제안자가 누구인가?
- 프로젝트 기획, 산출물 정의, 일정계획 설계자가 누구인가?
- 프로젝트 실행(연구수행)자가 누구인가?

② 프로젝트 비용 부담 주도적 역할자

- 프로젝트 비용 부담의 주도적 역할자는 누구인가?



2단계 의사결정 기준

①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및 결과물의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도는 어떠한가?

※ 아래 질문을 활용한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에 따른 판단

- 프로젝트의 목적이 주로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신기술확보인가?
- 프로젝트 수행시 기업의 기보유 지식재산(IP)을 대학의 기보유 지식재산(IP)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가?
- 프로젝트 결과물을 기업의 사업 및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할 가능성이 큰가?
- 프로젝트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기업이 직접적 수익창출이 가능한가?
- 프로젝트 결과물인 지식재산(IP)의 기업소유가 학연의 미래 연구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방향성>

구분	계약서 유형 선택 영향 요인	유형 1	유형극성	유형 6
프로젝트 (연구) 수행	기업이 프로젝트 제안 주체	No	學 研 기 업	Yes
	기업이 프로젝트 세부 기획, 산출물 정의 주체	No		Yes
	기업의 프로젝트 실행(연구수행) 참여 여부	No		Yes
프로젝트 비용 부담	기업이 전적으로(100%) 연구비 부담	No		Yes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결과물 활용 및 기존 지식재산(IP) 활용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신기술 확보	No		Yes
	기업의 기보유 지식재산(IP)을 대학의 기보유 지식재산(IP)보다 더 많이 활용	No		Yes
	기업의 사업 및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 가능성	No		Yes
	기업의 직접적 수익창출 가능성	No		Yes
	지식재산(IP)의 기업소유가 학연의 미래 연구수행에 지장 없음	No	Yes	

□ 계약서 유형 선택 모델

○ 단계적 의사결정 모델

- (1단계 의사결정) 앞의 1차 기준을 가지고 學研 단독소유(유형 1, 2), 공동소유(유형 3, 4), 기업단독소유(유형 5, 6) 등 선택 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를 결정 [6개의 유형중 4개의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
- (2단계 의사결정) 앞의 2차 기준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실시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최종 계약서 유형은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자율 결정

4

단계적 의사결정에 의한 계약서 유형 선택

<계약서 선택 기준>

- ◆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
- ◆ 3가지 기준(연구수행 주체, 연구비 부담, 연구목적·결과물 활용성·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을 2단계로 나누어 적용

1 (1단계 의사 결정) 계약서 선택 범주 결정

- 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1), 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2)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를 결정
 - 6개의 유형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

연구수행 주체	연구비 부담 주체	學研단독 (유형 1, 2)		공동소유 (유형 3, 4)		기업단독 (유형 5, 6)	
학연 100% 수행	기업 100%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	○	○	○	○		
	학연 부담 참여	○	○	○	○		
기업 일부 참여	기업 100%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			○	○	○	○
	학연 부담 참여		○	○	○	○	

② (2단계 의사 결정) 세부 계약서 유형 결정

-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및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 (결정기준 2)과 관련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 총 5개로 구성된 관련 체크리스트 응답에 따라 기업의 “사업적 직접활용”(3~5개) 또는 “전략적 간접활용”(0~2개)으로 구분하여 선택범위 압축

Check List	Yes
1. 프로젝트의 목적이 주로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신기술확보인가? Y) 기업의 신제품 출시, 공정개선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확보 N) 탐색적 차원의 연구, Seed형 연구	<input type="checkbox"/>
2. 프로젝트 수행시 기업의 기보유 지식재산(IP)을 대학의 기보유 (지식재산)IP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가? Y) 연구수행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직접 활용 또는 응용을 더 많이 하는 경우 N) 기업의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이 필요 없거나, 대학의 기보유 지식재산(IP)을 더 많이 직접 활용 또는 응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3. 프로젝트 결과물을 기업의 사업 및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가? Y) 특정 기간 내에 결과물의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 N) 지식재산(IP) 방어적 차원의 연구, 씨앗(Seed)형 연구 등	<input type="checkbox"/>
4. 프로젝트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기업이 직접적 수익창출이 가능한가? Y) 프로젝트 결과물을 직접적 생산에 적용, 단중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N) 학연과의 네트워킹 유지, 인력확보 목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프로젝트 결과물인 지식재산(IP)의 기업 소유가 학연의 미래 연구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Y) 기업이 지식재산(IP)을 소유하더라도 학연의 후속연구, 또는 유사연구와 무관한 경우 N) 기업이 비밀유지로 인해 학연의 후속연구, 관련연구를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input type="checkbox"/>



Yes 응답 수	가능한 결과
3~5개	사업적 직접 활용 (기업의 사업전략 및 활동에 직접적 활용)
0~2개	전략적 간접 활용 (기업의 사업전략 및 활동에 간접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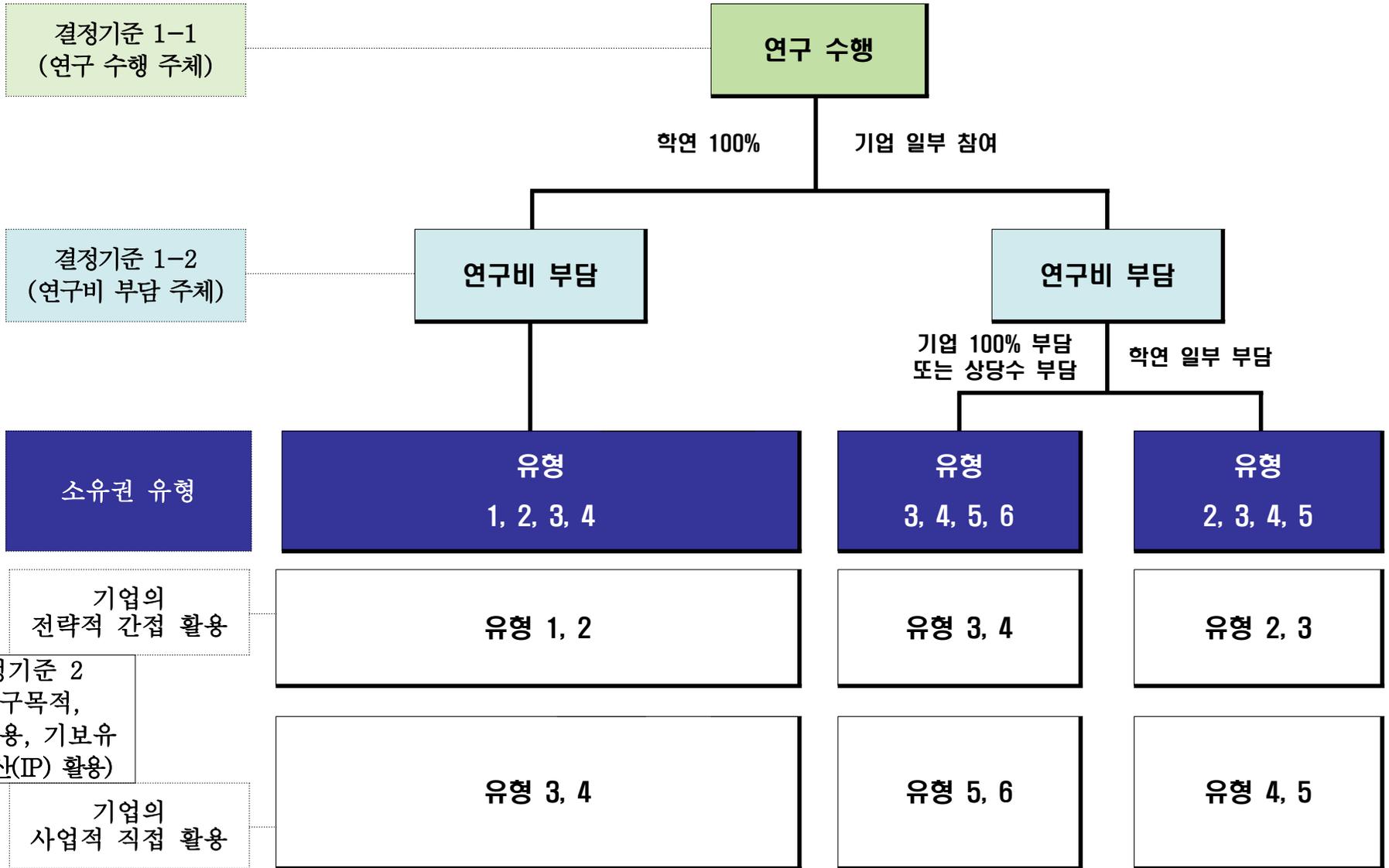
* Yes 응답수를 가지고 결과를 평가(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한 쪽(여기서는 기업) 관점에서만 질문을 작성한 것임

-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협약당사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최종 계약서 유형 결정

<1단계 및 2단계 의사결정에 따른 최종 계약서 유형 선택 방법>

1 단계 의사결정

2 단계 의사결정



⇒ 2개로 압축된 계약서 유형중 협약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최종유형 결정

Ⅲ. 산학연 협력연구 유형별 권고 계약서 (양식)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비

가. 선급금(○○%) : 금[]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비의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비를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비 사용 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이하 “최종 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 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기타 “대학(또는 연구소)”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 (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협력연구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 (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연구 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허여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항에 의해 허여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대학(또는 연구소)”이 부담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 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 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비

가. 선급금(○○%) : 금[]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비의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비를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비 사용 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이하 “최종 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 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기타 “대학(또는 연구소)”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 (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협력연구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 (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연구 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유상으로 허여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항에 의해 허여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먼저 “회사”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대학(또는 연구소)”이 부담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 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 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비

가. 선급금(○○%) : 금[]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비의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비를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비 사용 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이하 “최종 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 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 (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협력연구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회사”의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대학(또는 연구소)”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주회사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수익금 일부의 지급여부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익금 일부의 지급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각 당사자는 출원, 등록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단, 대학의 비용 부담이 어려울 경우 기업이 선부담하고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배분 받는 경우 추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 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 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비

가. 선급금(○○%) : 금[]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비의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비를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비 사용 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이하 “최종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협력연구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회사”의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대학(또는 연구소)”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주회사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수익금 일부의 지급여부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괴하여야 하며, 파괴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 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비

가. 선급금(○○%) : 금[]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비의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비를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비 사용 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이하 “최종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회사”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기타 “회사”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및 수익 보상)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제3자의 수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만약 연구개발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대학(또는 연구소)”의 실시에 대해서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로 실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③ “회사”는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 정도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에 수익 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을 실시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에 따른 “대학(또는 연구소)”에 대한 수익 보상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익 보상금 지급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연구결과에 대한 수익 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산정 방식 및 규모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되 정액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 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 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비

가. 선급금(○○%) : 금[]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비의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비를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비 사용 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이하 “최종 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 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회사”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기타 “회사”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및 수익 보상)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제3자의 수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만약 연구개발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대학(또는 연구소)”의 실시에 대해서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로 실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③ “회사”는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 정도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에 수익 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을 실시한다.

④ 연구결과에 대한 수익 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산정 방식 및 규모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되 정액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소유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 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 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IV.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해설서

1. 계약서의 구성

No.	항목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4조	연구기간
제5조	연구 책임자
제6조	연구의 수행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제8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제11조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수익 배분(보상) 등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제13조	확약 및 보증
제14조	비밀유지
제15조	명칭사용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제20조	지체상금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22조	안전사고
제23조	불가항력
제24조	계약의 변경
제25조	계약의 해석
제26조	분쟁의 해결

* 색칠되어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5개 조항은 6개 계약서 유형별로 조항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21개 조항은 6개 계약서유형별로 조항 내용이 다르지 않음

2. 표제, 전문 및 끝맺음 · 조인

(1) 표제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의 편의상 계약당사자나 제3자가 계약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에서 붙이며, 계약서 작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므로 표제를 붙이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그 편의적 효과를 고려하여 표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예를 들어 「협력연구계약서」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계약서」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2) 전문

계약당사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당사자 표기를 함에 있어서 회사, 대학, 연구소의 명칭 전부를 반복하여 표기하는 것은 번잡한 일이므로 가능하다면 한 단어를 사용하여 당사자를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또는 약칭을 당사자 이름이 전부 표시된 뒷부분에 괄호나 따옴표 속에 기재하고, 이후에는 그 명칭이나 약칭만으로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특히 협력연구협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 “을”의 표기를 지양하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당사자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문]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3) 끝맺음 · 조인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말미에 계약성립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말미 문구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 문구는 계약서의 형식을 갖춘다는 점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실질적 효력범위를 확정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미문구에는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수권이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다는 문언을 기입한다.

[예문]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맨 끝에는 계약당사로부터 각 계약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의 서명하는 난이 있는바, 이 서명난에 해당 대표자가 서명 또는 회사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계약의 적법한 체결이 입증된다.

3. 각 조항의 작성 요령

(1) 목적

목적 부분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예문]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시일이 경과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약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의 정의를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결과, 지식재산권, 비밀정보 등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를 정의해 둔다.

[예문]

- ① "연구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제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 ②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 ③ "비밀정보" 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협력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설정한다. 계약서에 협력연구의 구체적 내용을 다 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합의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첨 하도록 한다.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추후 쌍방의 해석에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예문]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연구기간

협력연구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만약 연구종료 후 일정기간의 사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예문]

이 계약상 연구기간은 20부터 20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기간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5) 연구 책임자

협력연구의 책임자 및 연구인력을 명시한다.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은 (3)의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변동 시 상대방의 동의 조건 또는 통지의무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

(7)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총액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가능하나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사전에 합의하여 명시한 금액과 지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구비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명시한다.

연구비의 항목은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서 언급된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연구비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 방법과 연구비 사용 실적에 대한 보고방법을 명시한다.

[예문]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비

가. 선급금(○○%) : 금[]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 []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 []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비의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비를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비 사용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8)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연구결과의 보고 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명시한다. 최종보고의 일정 및 방법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중간보고 또는 그 외 진도보고 일정 및 방법을 규정할 수도 있다.

연구종료를 결정짓기 위해서 최종보고서의 검수 방법 및 일정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수정, 보완에 대한 방법도 규정할 수 있다.

[예문]

-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이하 “최종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합의에 의한다.

(9) 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6개 계약서 유형별로 달리 규정된다. 계약서 유형의 결정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되 최종적인 유형의 결정은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 있어 공동연구 참여자 간 지분비율은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비율이 불명확한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공동연구자를 규율하는 각 소속회사 내지 대학·연구소의 내규에 의해 정해진다. 즉, 연구개발 자체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지만 직무 발명규정 등에 의해 연구원이 한 발명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주체인 대학·연구소, 기업이 각각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대학·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서 연구결과의 소유권을 공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고유의 성질에서 연유하는 공유의 특징을 이해하고 특허권 등의 귀속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상 합유관계에 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특허법 제99조 제3항),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특허법 제99조 제2항),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대학·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계약을 통한 연구결과를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유자로서 해당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특허법상 지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일단 공유로 등록되는 경우 향후 공유자인 기업이 도산한다거나 사실상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해당 특허권을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문]

계약서 유형	연구결과의 귀속 조항 내용(제9조)
유형1.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p>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p> <p>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기타 “대학(또는 연구소)”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유형2.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유상 전용 실시권	유형1과 동일
유형 3. 공동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p>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p> <p>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p>
유형4. 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3과 동일
유형5. 기업단독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보상(인센티브)	<p>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p> <p>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회사”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p> <p>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기타 “회사”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유형 6. 기업단독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보상(인센티브)	유형5와 동일

(10)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 있어 연구계약 체결이전에 개발된 기술, 특히 대학·연구소의 기술은 그동안의 계약관행에서는 연구계약체결 시점에서 기업이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학·연구소의 경우 계약체결 주체가 대학 또는 연구소가 되어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까지 이 범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개량기술에 대해서도 작게는 계약 후 1년, 심지어는 계약 후 5년까지 기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향후 연구개발의 흐름까지 막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해당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식재산권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관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교에 적절한 투자를 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획득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가 필요할 경우 연구수행을 위한 비상업적인 목적의 활용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무상 실시가 가능하게 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실시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유형 1~4(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의 경우 협력연구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노하우(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를 할 때 “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한다.

[예문]

계약서 유형	기존재산권의 실시 조항 내용(제10조)
유형1.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 (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p>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p> <p>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협력연구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유형2.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유상 전용 실시권</p>	<p>유형 1과 동일</p>
<p>유형 3. 공동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p>	<p>유형 1과 동일</p>
<p>유형4. 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p>	<p>유형 1과 동일</p>
<p>유형5. 기업단독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보상(인센티브)</p>	<p>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 (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p>
<p>유형 6. 기업단독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보상(인센티브)</p>	<p>유형 5와 동일</p>

(11) 연구결과 등의 실시

연구결과 등의 실시는 6개 계약서 유형별로 달리 규정된다. 연구결과 등의 실시에 대한 규정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되 최종적인 유형의 결정은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별도의 실시계약서에는 실시권의 유형, 유무상 여부, 실시권 허여기간, 실시권 허여 범위, 기술이전의 방법, 실시료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한편 공동소유인 경우(계약서 유형 3, 4) 연구결과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은 지분처분·제3자 실시 시 동의여부, 실시에 따른 수익의 배분이다. 먼저 공동소유의 지분처분에 있어서 협력연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3자 실시 시 동의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및 대학·연구소 모두 제3자 실시가 상대방의 이해를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제3자 실시가 허용될 수 없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자,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회사”의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제3자 실시 등). 또한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제3자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예를 들면 상대기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 대학·연구소의 지주회사 등).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연구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보통 해당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결과를 결합하여 또는 총체적으로 제3자와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대학·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라이선싱 형

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료를 수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자금만을 부담하여 지식재산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크로스 라이선싱 (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연구소에게 적절한 실시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연구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기실시의 경우 협력연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구결과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수익배분이 아닌 보상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에 의한 매출 발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어 수익금 일부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하여 수익금 일부의 지급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문]

계약서 유형	연구결과 등의 실시 조항 내용(제11조)
유형1.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허여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항에 의해 허여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유형2.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유상 전용 실시권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유상으로 허여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항에 의해 허여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먼저 "회사"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유형 3. 공동소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회사”의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대학(또는 연구소)”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주회사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한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수익금 일부의 지급여부를 상호간의 합의에 의

	<p>하여 결정한다.</p> <p>⑥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익금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p>
<p>유형4. 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p>	<p>유형 3과 동일. 단, 유형 3의 ⑥항은 삭제</p>
<p>유형5. 기업단독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보상(인센티브)</p>	<p>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제3자의 수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만약 연구개발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전항에 따른 “대학(또는 연구소)”의 실시에 대해서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로 실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p> <p>③ “회사”는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 정도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에 수익 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을 실시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에 따른 “대학(또는 연구소)”에 대한 수익 보상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익 보상금 지급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p> <p>④ 연구결과에 대한 수익 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산정 방식 및 규모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되 정액제를 원칙으로 한다.</p>
<p>유형 6. 기업단독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보상(인센티브)</p>	<p>유형 5와 동일. 단, 유형 5의 ③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p> <p>③ “회사”는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 정도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에 수익 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을 실시한다.</p>

(12)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의 부담 주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결과 발생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권리방어비용 포함)의 부담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특허 등을 자기실시하지 않는 대학·연구소의 경우에는 산학연 협력연구개발계약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인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의 부담 관련 계약조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화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있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각 협약유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학·연구소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연구소가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또는 대학·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을 부담함에 있어서 i) 권리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ii) 공동연구개발계약의 파트너인 기업에게 어떠한 실시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문]

계약서 유형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 부담 조항 내용(제12조)
유형1.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대학(또는 연구소)"이 부담한다.
유형2.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유상 전용 실시권	유형1과 동일
유형 3. 공동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각 당사자는 출원, 등록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단, 대학의 비용 부담이 어려울 경우 기업이 선부담하고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배분 받는 경우 추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유형4. 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유형5. 기업단독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보상(인센티브)	유형 4와 동일
유형 6. 기업단독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보상(인센티브)	유형 4와 동일

(13) 확약 및 보증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업과 대학·연구소 공히 해당 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 따른 연구결과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대학에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떠넘기는 경우, 대학·연구소 입장에서는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자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학·연구소의 경우 수많은 연구과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이에 대한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사전에 타당성 조사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완전한 권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단계에서의 문제는 해당 특허 등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는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기술에 대한 침해보증소송이 기술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침해소송 하나로 대학·연구소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원천적으로는 기업이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 혹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해당 과제의 발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결과에 대한 실시와 이를 통해 실익을 얻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해당 연구결과가 제3자의 특허침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노력을 명시하는 수준에서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문]

-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4) 비밀유지

대학·연구소에서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으로 산출된 연구결과를 학회 등을 통하여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대학·연구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특허출원 전에 학회에 발표하는 경우 협약에 의하여 생성된 연구결과인 특허가 특허법 제30조의 신규성 상실의 원인이 되어 무효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서 공동연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한 연구결과가 특허출원 전에 발표되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특허법 제30조의 신규성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구비하도록 의무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나 학회에 논문을 발표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블랙박스화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노하우의 형태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결과를 대학·연구소가 소유하거나 대학·연구소와 기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협의와 함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향후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문]

-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15) 명칭사용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서에 명칭 사용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의 사용에 있어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협약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과대 홍보 등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칭사용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예문]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대학·연구소에 대하여 기존 연구와 유사 또는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연구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연구가 기술발전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계약에서 진행하였던 연구를 제3자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와 관련된 유사연구 제한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그 범위 및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공동연구의 계약당사자인 대학·연구소의 입장에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해당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서 유사연구의 제한 범위를 당해 연구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문]

계약서 유형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제한 조항 내용(제16조)
유형1.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유형2. 학연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유상 전용 실시권	유형 1과 동일
유형 3. 공동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형4. 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 3과 동일
유형5. 기업단독소유,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보상(인센티브)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형 6. 기업단독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보상(인센티브)	유형5와 동일

(17) 계약의 효력발생

계약기간은 협약 당사자의 합의해 의해 정하고 계약 조항에 명시하도록 한다(제4조 연구기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효력은 작성된 계약서에 협약 당사자가 서명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예문]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18) 계약의 해지 등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계약위반 또는 계약위반은 없었지만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소위 약정 해지권이 발생하고 이 행사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가능 사유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연구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통상적으로 계약해지 일은 계약해지 사유 발생일보다 뒤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연구비의 정산은 계약해지 사유 발생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때 계약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예문]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19)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계약서 제13조(확약 및 보증)에서는 제3자 권리 침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 대학·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닌 연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은 대학·연구소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한다.

[예문]

-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지체상금

연구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연구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진 협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에 대해 통보하고 승인을 얻을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지체상금의 규모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예문]

-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21) 신의성실의 원칙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당사자는 계약 조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성실하게, 상호 협력하여 이행할 것을 명시한다.

[예문]

-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안전사고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주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의 의무를 게을리한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문]

-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23) 불가항력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당사자가 사전 예상하기 어렵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 조항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정한 정형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전쟁, 내란, 파업 등 당사가 책임이 없는 사태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열거, 기재할 필요가 있다(또는 특별한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불가항력 조항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불이행책임은 면제된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면책효과 발생의 전제요건으로 조항기재의 통지의무 및 사실입증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예문]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4) 계약의 변경

계약 내용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한다. 협약 이후 계약 변경이 필요한 중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예문]

-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 계약의 해석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의 각 조항은 협약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이후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예문]

연구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분쟁의 해결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함을 명시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함을 명시한다.

[예문]

-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V. 가이드라인 관련 FAQ

① 가이드라인 취지 및 활용 관련 FAQ

Q1.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산학연 협력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본 가이드라인에서의 협력연구란 산학, 산연 양자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를 대상 적용 범위로 함.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Q2. 사적자치영역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상의 갈등, 쟁점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인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 혁신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함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당사자간 협상력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이나 중소기업 등이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음

Q3. 정부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있는가? 구속력이 없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 본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님. 그러나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산학연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자율적 활용을 통하여 산학연 협약 주체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Q4. 현재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협력연구 계약서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고쳐야 하는가?

☞ 가능하다면 대학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서 양식을 다원화하고 연구자(교수)들에게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Q5. 1단계 유형선택 결정기준에서 연구수행 “일부” 참여, 연구비 “일부” 부담에서 “일부”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10% 이상과 같이 명확한 양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가?

☞ 협약대상 연구과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를 정의하기 어려움. 소유권 및 실시권 형태가 연구수행 및 연구비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협약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최선임

Q6. 2단계 유형선택 의사결정 기준으로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Yes”, “No”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Yes”, “No” 판정에 대한 판단이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가?

☞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의 “Yes”, “No” 판정 여부는 기업과 대학·연구소 협약 주체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음. 일방적 자기주장은 지양하고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협의를 통해 “Yes”, “No” 여부를 판정해야 함

Q7.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선택 모델에 따르면 최종적인 계약서 유형의 결정이 특정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2개의 복수 유형인데 최종적으로 하나의 유형이 선택되게 할 수는 없는가?

☞ 최종적으로 하나의 유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협약 당사자간 계약서 유형 결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유형 선택, 2개의 유형 선택, 4개의 유형선택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었는데,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유형선택의 유연성과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실효성 모두를 고려할 때 2개 유형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정함

Q8. 가이드라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활용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기술료 완화, 분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기업, 대학, 연구소 각각의 특성이 달라 현재로서는 일률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찾기는 어려움. 향후 현실적이고 유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음

Q9.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관련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가?

☞ 불공정 거래와 같은 위법 사항이 아닌 사적계약에서 협약 당사자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경우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분쟁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Q10. 산학연 협력연구의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순수한 인력양성 목적의 협약, 자문 협약, 용역연구 협약 등에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필요한가?

☞ 순수한 인력양성 목적으로 기업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자문 등의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용역연구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간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연구라 함은 “구매(Buying)” 개념으로 기업이 용역 대가를 지불하고 연구의 결과물 일체를 확보·소유하는 형태의 연구이기 때문에 협력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협력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연구」로 정의하거나 「용역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연구」로 정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② 유형별 계약서 주요 쟁점 조항 관련 FAQ

Q11.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협력 연구결과의 소유권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 사적자치영역에서 산학연 연구결과의 소유권은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됨.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수행 주체, 연구비부담 주체, 그 외 연구목적·결과활용·기존 지식재산(IP) 활용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크게 대학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의 3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 ☞ 연구결과에 따른 소유권과 관련 발명주의 원칙을 고려하되, 협력 연구의 경우 연구수행 뿐만 아니라 연구비 부담 등 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고려한 결과임

Q12.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가 필요할 경우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 ☞ 일반적으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비상업적 목적의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비용 없이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단,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함
- ☞ 연구결과물에 기존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실시할 경우 기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Q13.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협력연구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 6가지 계약서 유형 중 여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유형1(대학 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무상통상실시권)과 유형3, 4(공동소유)에 해당될 수 있음 유형2에서는 모든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형 5, 6은 회사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

☞ 유형1의 경우 대학이 회사의 기보유 기술이 포함된 연구결과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 실시 할 경우 회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Q14.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공동소유의 경우(유형 3, 4) 제3자 실시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원칙적으로 제3자 실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대학·연구소의 경우 상대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에 대한 제3자 실시를 기업이 불필요하게 불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보」만으로 실시 가능하게 하였고, 기업의 경우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학의 동의 후 추진하는 것이 기업활동을 상당히 제약 한다는 측면에서 「통보」만으로 실시 가능하게 하였음. 결론적으로 대학·연구소와 기업 양자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제3자 실시 가능한 경우를 두었음

Q15.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기업의 자기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이 포함된 계약서 유형(유형 3, 5)이 있는데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이 타당한가?

☞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은 실시에 따른 로열티 개념이 아니라 협력연구 결과를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연구수행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설정한 것임. 대학은 자기실시의 기회가 거의 없고, 기업의 경우 자기 실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협력연구의 취지를 살려 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수행 주체인 대학·연구소에 지급하도록 하였음. 통상적으로 기업내부에서 발명자에 대한 내부 보상과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Q16.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유형 3, 4),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은 발생하지만 생산 투자비 회수에 못미치는 등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3(공동소유), 유형 5(기업단독소유)에서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지만, 형편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수익금 일부의 지급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음

Q17.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학연의 연구결과에 대한 수익배분 또는 보상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수익배분율이나 보상(Incentive) 금액은 가이드라인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협약 당사자간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Q18.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공동소유권을 가진 경우 기업이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에 대한 실시를 하고자 할 때 이들에 대한 실시가 제3자 실시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 해외법인이나 자회사에 대한 실시는 제3자 실시에 해당됨. 이들 경우가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학연이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둘째는 제3자 실시에 대한 수익배분이 발생하기 때문임. 첫 번째 경우는 제11조 4항에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였음. 두 번째 경우는 공동소유의 경우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발생시 수익을 배분토록 되어 있고, 해외 법인 이나 자회사라 할지라도 실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Q19.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출원 및 유지 비용은 소유권자 부담이 원칙인데 왜 유형4(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는가?

☞ 공동소유의 경우 대학은 자기실시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 지급이 없다면 실제로 공동소유로 인한 수입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자기 실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정의하였음

Q20. (제13조 협약 및 보증)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체결시 기업과 대학 모두 해당 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완전한 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연구결과의 활용 시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가능 조취를 취하도록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상호 합의가 필요함

☞ 현실적으로 제3자 권리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대학·연구소가 이에 대한 배상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음. 이러한 문제는 계약서 조항으로 해결되기보다 분쟁 당사자간 소송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므로 계약서 유형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Q21. (규정 추가) 협력연구 계약서 이외에 지재권의 실시관련,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은가?

☞ 기술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협력연구 계약서와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함. 다만 이번에 작성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추후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보완 시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해 나가겠음

Q22. (규정 추가) 협력연구 결과를 활용한 개량발명에 대한 기업의 권리 등에 대한 조항 추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 협력연구 결과를 활용한 개량발명 가능성은 상존하며 따라서 협력연구 계약서에 개량발명 발생 시 소유권 및 실시 등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함. 다만 이번에 작성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량발명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추후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보완 시 개량 발명에 대한 조항의 추가를 검토해 나가겠음

③ 산학협력단의 계약서 유형 및 조항 관련 FAQ

Q23. (계약서 유형 선택) 특허 소유권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발명자주의이며 따라서 계약서 유형 선택의 1단계 기준에서 프로젝트 비용부담 주체는 제외하고 프로젝트 수행주체만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 발명자주의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발명자 권리의 보장 목적은 발명의 보호, 장려, 이용/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임. 따라서 발명자주의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사적자치영역인 기업과 학연의 협력연구협약에서 전적으로 발명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권 귀속(즉, 프로젝트 수행 주체만을 고려한 특허 소유권 결정)원칙이 현재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연구의 여건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한가 등은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연구자의 자체 기획 및 연구수행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기업의 의뢰에 의한 산학연 협력연구는 어떤 측면에서는 직무발명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도 함

※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근로자)는 소유권 확보 또는 예약승계에 따른 대가 보상을, 사용자는 통상실시권 또는 예약승계를 통한 권리확보 가능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계약서 유형 선택 기준으로 프로젝트 수행 주체만을 전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지속적 검토를 해 나가겠음

Q24. (계약서 유형 선택) 2단계 의사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5가지 질문 체크리스트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사적 자치에 합당하지 않은가?

☞ 2단계 의사결정 기준이란 당사자간 합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가능한 것은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임. 5가지 질문 체크리스트에 대한 판단이 기업, 학연 각 주체별로 다

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산학협력연구가 상호 신뢰와 합리적 사고에 의해 추진됨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 기준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2단계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가되, 향후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추후 이를 반영, 보완토록 하겠음

Q25. (계약서 유형 선택) 학연단독소유(유형 1, 2), 공동소유(유형 3, 4), 기업단독소유(유형 5, 6)로 나누는 것이 학연단독소유의 유명무실화, 기업의 연구결과물 독식 가능성을 높여 현재 학연의 상황보다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 본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서 산, 학, 연의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특성에 따라 학연단독, 공동, 기업단독 소유권 유형이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어느 일방의 입장을 더 반영한 것은 아님.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음

Q26.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유형 3, 4) 학연이 기업에게 지분매입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분매입을 거부한다면, 학연은 기업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분처분 또는 실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업이 타당한 이유 없이 학연으로 하여금 지분처분도 못하게 하고 제3자 실시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지 않은가?

☞ 학연의 경우 상대기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학연의 지주회사에게 제3자 실시를 하고자 할 경우 기업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분처분의 경우 우선협상권을 가진 기업이 지분매입을 거부한다고 해서 기업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분 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특허법과의 충돌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개선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업측의 의견 등도 수렴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Q27.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유형 3, 4) 학연의 제3자 실시 시 반드시 기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비경쟁적 기업’ 등의 명확한 요건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 방안을 찾기는 어려움. 현재로서는 기업 및 학연 당사자가 협의 과정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추후 불확정개념의 용어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

Q28.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유형 3, 4) 기업의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에 대해서 왜 일반적인 제3자 실시와 달리 학연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어야 하는가?

☞ 기업이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을 하는 것이 대학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반대로 대학이 비경쟁관계인 기업에게 제3자 실시를 할 경우 기업에게는 미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문제는 동의여부 보다는 그에 따른 수익 배분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기업이나 학연에게 제3자 실시 시 동의 대신 통보만으로 가능한 단서 조항을 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지재권의 활용성을 최대화 하여 협력연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Q29.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유형 3, 4) 기업의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에 대해 학연에 대한 보상을 명시화해야 하지 않는가?

☞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의 경우 제3자 실시이고 따라서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

으나, 현실적으로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선싱(Package-licensing)에 따른 기업의 수혜 규모를 산출하거나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음.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기업과 학연이 협의하여 수익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 기업의 의견수렴 및 적절한 수익 배분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Q30.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유형 3, 4, 5, 6) 수익배분 등의 용어 대신 기술개발보상금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 ‘수익 배분’과 ‘기술개발 보상’은 용어의 문제 이전에 개념적 차이가 있음. 공동 소유의 경우 제3자 실시 수익의 공유는 ‘수익 배분’ 개념이며, 자기 실시 수익의 공유는 ‘기술개발 보상’ 개념임.

그러나 기업 및 학연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용어 및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 문제는 기업 및 학연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Q31.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유형 3, 4, 5, 6) 수익 배분(또는 기술개발 보상)의 산정 방식 및 규모에 대한 협의 시점을 명시(예: 연구가 종료된 이후 ○년 이내)해야 하지 않는가?

☞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시점을 명시화 하는 것은 기업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음

Q32.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유형 3, 4, 5, 6) 수익 배분(또는 기술개발 보상)의 산정 방식 및 규모 협의와 관련 공정한 협상을 위해서는 학연측에 자료제공 요구권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는가?

☞ 공정한 협상을 위해 수익 배분 방식 및 규모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기밀의 공개우려 등 정보 공개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음. 앞으로 필요 정보 내역,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Q33.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유형 3, 4, 5, 6) 만약 기업이 약속한 수익 배분(또는 기술개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예: 특허 비용 분담, 권리의무 양도, 유사연구 제한과 같은 조항의 효력 상실)이 필요하지 않는가?

☞ 계약서 제19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수익 배분 규정의 미 이행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Q34. (제12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유형 3) 대부분의 산학연협력연구에서 특허권 공동소유시 특허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부담 조항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 특허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자 부담인데 공동소유의 경우 유형 4의 경우에는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오히려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제3자 실시 수익 배분과 더불어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까지도 배분하도록 한 유형 3에서는 대학의 수익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허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대학의 비용 부담이 어려울 경우 기업이 선부담하고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배분 받으면 추후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음. 따라서 현재의 가이드라인도 대학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며 대학측 의견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을 보면서 반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Q35. (제13조 확약 및 보증) 분쟁 발생 경우 기업과 학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대학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선언적 내용으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확약 및 보증 관련 학연측에게 특정한 손해배상액수나 의무/책임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는 대학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만들어진 조항으로써 협력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 생각하나 시행과정에서 개선여지가 있다면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음

Q36.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유형 3, 4, 5, 6) 유사연구 제한 관련, 유사연구 금지 의무 주체를 학연이 아닌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사연구가 아닌 동일연구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 유사연구 금지 의무 주체의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유사연구를 동일연구로 변경하는 문제는 “유사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의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시 반영해나가겠음